

공지사항

전기전자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 중 개정고시안내

공업진흥청 고시 제 92-176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3조(품질표시의 기준 등)
의 규정에 의한 전기전자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
시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2. 5. 9.

공업진흥청장

제4조(제조업체의 명칭부기)를 다음과 같이 한
다.

제4조(제조업체 등 명칭부기) 전기전자제품의 품
질표시는 포장(투명한 포장의 경우는 제외) 및 날
개에 제조업체명 또는 상표, 제조업체의 주소 또
는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및 제조년월 또는 룻
트번호(주1)를 표시한다.

다만, 수입품의 경우는 원산지, 제조업체명 또
는 상표, 수입자명, 제조 및 수입년월, 수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를 표시하여
야 하며(전전지는 수입년월 표시 제외) 보조의 방
법으로 판매업자명과 주소 또는 전화번호(지역번
호 포함)를 표시할 수 있다.

(주1) 제조년월 대신에 룻트번호를 표시할 경
우에는 제조년월을 확인할 수 있는 룻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위치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표시위치 등) 전기전자제품의 품질표시는
상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선
명한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고시는 1992. 9. 1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조가공되
었거나 수입된 상품은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농촌일손돕기운동 안내

1. 농촌 일손돕기 운동 전개

가. 주 관 : 농림수산부, 내무부

나. 추진기간

○봄철 영농기 : 5. 11~6. 30(51일간)

○가을철 영농기 : 10. 1~11. 30(61일간)

다. 추진방법

○『일손 지원센타』 창구 설치

—농림수산부, 시도, 시군 및 읍면에 『일손
지원센타』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 운
영

○지원 대상농가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농가로서 노동력이
없거나 부족한 농가(국가보훈대상자, 노약
자, 부녀자, 군입대 농가 등)를 우선지원
—영농의 기계화가 저조한 산간오지 농가를
중점지원

○일손돕기 참여대상

—공무원, 학생, 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인,
예비군

—상공부 산하단체(정부투자기관, 경제단체,
협회, 협동조합 등) 등 각급기관·단체

—농촌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일반 기업체 임
직원과 단체

○참여방법

—일손돕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에
서는 인근 시·도, 시·군, 읍·면의 『일손
지원센타』와 협의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코자 하나 인력동원,
이동거리, 작업시간 등을 감안, 일손돕기가
여의치 못한 단체, 기업체 등은 참여경비
를 성금으로 기탁받아 대체지원

○일손돕기시 유의할 사항

—작업을 할 때는 최소한 1일 5시간 이상 작
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민폐되는 일이 없
도록 도시락 등을 자체준비

공지사항

— 많은 인력이 일손돕기를 같은 장소에서 할 때는 작업도구를 자체준비하여야 하며 농 가별 소수인원이 지원될 때는 당해농가에 서 준비

2.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

가. 주 관 : 농림수산부

나. 기 간 : 5월 11일부터 연말까지

다. 추진방법

○ 농기계 보내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

○ 출향인사의 애향운동 일환으로 고향에 농기 계 보내기운동 전개

○ 농촌 일손돕기 경비를 농기계 보내기 성금으 로 지원

— 성금 또는 현금 기탁

○ 접수처

— 농림수산부 『일손지원센타』(전화 : 503-7256, 500-2691)

※ 송금계좌 — 예금은행 : 농협 정부제2청

사지점(파천)

— 예금주 : 농림수산부

계좌번호 : 134-01-113090

— 방송사 또는 신문사(KBS와 서울신문사에 서 성금접수창구 개설 모금중)

— 지방에서 접수를 원할 때는 지방언론기관 또는 시, 도, 군 일손돕기센타

※ 시·도, 시·군에 송금계좌 설치

'92 중국 전자산업 시장조사단 모집 안내

1. 방문지역 : 중국(천진-북경-연길-백두산- 심양-서안-상해)

2. 기 간 : 1992년 8월 9일(일)~8월 18일(화)
(9박10일)

3. 참가대상 :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

4. 진행안내

가. 중국 전자산업 현황 및 주요 도시 전자제품 보유현황 파악.

나. 조선족이 운영하는 업체 방문, 백두산 등 정, 홍구공원, 임시정부 등을 견학함으로 서 단일민족으로서의 일체감 고취.

다. 유적지 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5. 참가비용 : ₩ 1,800,000(단, 여권수속비 별도)
*신청서 제출시 참가비용의 10% 선납.

6. 접수마감 : 여권소지자 7월 9일(목), 여권미소 지자 7월 4일(토)

7. 일정

일자	지역	일정
8월 9일 (일)	서울 천진	서울~천진 천진~북경 및 상권 견학
8월 10일 (월)	북경	CCPIT상담 및 필요정보 수집 CNEIEC상담 및 필요정보 수집
	북경	서커스 관람
8월 11일 (화)	북경	기업체 방문 명13층, 만리장성 관람
8월 12일 (수)	북경 연길	자금성, 천안문 견학 북경~연길
8월 13일 (목)	두만강	두만강 관람
	백두산	연길~용정~백하~백두산
8월 14일 (금)	백두산 연길	백두산 천지 견학 천지 출발~연길 도착
8월 15일 (토)	연길 심양	연길~심양 조선족운영업체 방문 및 동릉
8월 16일 (일)	심양 서안	심양~서안 화청지 견학
8월 17일 (월)	서안 상해	서안, 합서성박물관, 진시황릉 진시황병마통갱박물관 서안~상해
8월 18일 (화)	상해 서울	임시정부, 홍구공원 상해~서울

*신청 및 문의처 : 국제경영정보시스템

TEL : 525-6751(직), 525-6711, 522-1316

공매공고 안내

공지사항

법정 장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물품을 관세법 제122조 및 제12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1992. 5. 8.
청주세관장

공매 목록

품명	반입일자	규격	수량	B/L번호	예정가
IC	91. 8. 22	TDA2050	4,050	9032962	₩3,481,590
LED	91. 8. 24	LTF3501	2,010		₩3,658,410
DISPLAY		LTR546AD	2,010	666419	
		LB1258	2,010		
I.C	91. 8. 24	LA1266	1,000	43645140	₩6,439,820
		LC7230	2,040		
IC	91. 9. 9	BA3830	2,040	61404972	₩2,396,030
		LC7461	2,040		
I.C	91. 9. 28	7561	2,040	43656852	₩7,620,820
		LA3246	2,040		
		LC7821	2,040		
I.C	91. 10. 4	HA13118	4,020	77129	₩3,061,890
SOCKET	91. 10. 7	CFG1305	4,040	41705963	₩2,163,490
		CFG1105	2,020		
SOCKET	91. 10. 7	CFG1305	2,020	41705952	₩722,810
		CFG1311	2,020		
SOCKET	91. 10. 29	CFG1111	2,040	41712005	620,240
		CFG1311	1,000		

(문의처 : 0341) 69-0123)

중국 시장개척 및 투자환경 연구조사단 모집안내

1. 목 적

최근 대공산권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시장의 진출을 위해 중국 우수기업 및 관련단체 방문을 통해 현지투자 및 시장진출 가능성 모색

2. 연수시기 및 지역

차수	기간	일정
제1차	1992. 6. 21-6. 28	A안
제2차	1992. 7. 5-7. 12	B안
제3차	1992. 7. 19-7. 26	C안
제4차	1992. 8. 2-8. 9	A안
제5차	1992. 8. 16-8. 23	B안
제6차	1992. 9. 6-9. 13	C안

3. 인원 : 각 15인 내외

4. 주관 : 한국생산성본부(KPC)

5. 협조기관 : 아시아생산성기구, 중국상공회의소, 중국 국제공공관계 협동강협회

6. 연구내용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및 금후 시장경제로의 발전방향 연구

○ 유망진출업종/품목 파악을 통한 수출시장 변화 모색

○ 현지 합작투자공장 설립, Plant 수출 등에 관한 현지 기업인과의 Meeting

○ 장/단기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세부진출방안 집중 논의

○ 노동력, 임금구조 및 생산판매 환경 조사

7. 문의처 : 739-5868

방글라데시의 외국인투자안내

1. 개요

방글라데시 정부는 산업발전과 공업화의 향상을 위하여 자국인 또는 외국자본가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1980년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은 항구도시인 치타공에 처음으로 수출공단을 설립, 1984년에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69개의 공장이 공단내 승인되어 가동하고 있다. 이나라의 수도인 다카 수출공단 역시 진보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2. 치타공 수출공단

공지사항

가. 위치

- 치타공 항구로부터 2.4km
- 지역주산업센터로부터 5.63km
- 국제공항으로부터 7.24km

나. 공단면적

- 630에이커(255헥타아르)

다. 산업시설

- 용수공급량 : 3,176m³/일

- 전력공급 : 10,000kw

415/240볼트

- 가스공급 : 136,000m³/일

5,667m³/시간

- 공장건물 : - 총면적 : 38,725.95m²

- 공장부지수 : 430개

○ 전화·통신시설 :

위성통신으로 연결된 국제전화, 텔레스, 팩스 시설

3. 다카 수출공단

가. 위치

- 다카시청에서 35km

- 지아국제공항에서 24km

나. 공장면적

- 142에이커(58ha)

다. 공장건물

- 공장건물 : 41,000m²

- 공장부지 : 228개

라. 투자장려 종목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

- 전자, 전기공업

마. 교통시설

충분한 철도, 도로와 항공교통

4. 외국인 투자

가. 간소화된 절차

- 방글라데시 수출공단

- 일반적으로 1주~6주내 허가

- 요구된 수출입허가

– 요구하는 노동허가

– 지원시설 설치

- 지원청 : 세무소, 우체국, 지방·국제은행, 병원, 소방서, 경찰서

다. 투자의 형태

- 100% 외국인투자 설립

- 외국인과 내국인 합작

- 100% 내국인 투자설립

라. 자본의 형태

- 외국자본가의 외화투자

- 개인, 공립주식회사 또는 단독, 제휴사업의 선택권

마. 투자보장

- 외국인자본(축진·보장)은 1980년 이후 방글라데시에서 모두 안전하게 유통됨.

바. 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사항과 특전

- 10년동안 세금 면제

- 면세기간후 수출에서 발생한 수입 50% 면제후 소득세

- 쌍방 합의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 수축가공지역(EPZ)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시 면세

- 일정조건에 입각, 3년간 외국기술자의 월급에서 소득세 면제

- 기계류, 장비, 원자재 등의 수입시 세금 면제

- 투자의 무한계

- 이윤과 자본의 완전 송환

- 외국인 고용의 허가

- 외국인들을 위한 세금면제기간동안 이익배당 세금의 완전면제

- 업무의 완료, 퇴직시 소득에 의한 저축금, 퇴직금, 개인적 자산등은 송금이 가능.

- 인가된 로열티, 기술사용료의 송금 가능

- 수입제한정책으로부터의 자유

- 오프-쇼어 금융기관의 활용

- 기존 해외산업체의 이전 가능

- 원자재 수입 등 일정유형의 산업체에 대한 백투백 신용장 승인

공지사항

- 수출가공지역(EPZ) 거주 외국인들은 수출지역 외부로의 자유로운 이주 등 모든 점에서 방글라 데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 OPIC(해외 개인투자회사, 미국)의 보험 및 금융 프로그램의 실시
- 수출가공지역(EPZ) 산업체들은
 - 방글라데시의 특정 노동법의 적용
 - 인지세
 - 국세와 지방세 등으로부터 면제됨.
- BEPZA의 관할과 배려하에 수출가공지역(EPZ)내의 통관 사무소기능이 24시간 가능됨. 또한 모든 통관절차가 수출가공지역(EPZ)내에서 완료.
- 사.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종목 : 의복류, 섬유상품, 방직·편직의류, 시계류, 전기장비, 전기부품,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레이저기술 제품 등
- * 기타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 상무관실 (전화 : 796-405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진경제기술개발구 투자안내

천진경제기술개발구는 1984년 12월 6일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중국경제특구의 우대정책과 융통성 있는 조치로서 주로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독자기업을 유치하는 경제구역이다. 이 개발구는 천진시의 국제무역을 선도로 하여 현대공업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업, 제3산업이 조화, 발전하는 외향형 경제중심이다.

천진경제기술개발구는 천진시 동남에 위치하여 있는데 시중심에서 50km의 거리이며 천진신항과 인구 42만의 탕구구에 잇대어 있다.

천진경제기술개발구의 총면적은 33평방킬로미터이며 1990년 말까지 이미 제1차로 개발한 면적은 4.2평방킬로미터인데 그중에는 1.2평방킬로미터의 생활구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제8차5개

년계획기말(1995년)까지 개발할 면적은 총 14.5평방킬로미터에 달할 것이다.

천진경제기술개발구는 부단한 노력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1990년 말까지 이미 비준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216건이다. 그중 이윤을 얻은 일부분 기업은 자본을 증가하고 있다. 미국연합규화회사가 46.7만달라를 투입해 만든 평가보고의 분석에 의하면 천진경제기술개발구는 그의 우량한 투자환경으로 인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한 수준이 이미 대만, 한국, 태국의 일부 수출공업단지를 초과하고 있다.

1. 투자자문서비스기구

천진개발구관리위원회와 총공사의 각부문은 모두 다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만족할만한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투자하는 분들은 제때에 믿음성 있는 회답을 받을 수 있다. 개발구의 하기 기관은 투자자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진경제기술개발구공공관계부(전화 : (022) 988112)

천진경제기술개발구국제상회(전화 : (022) 986535)

천진경제기술개발구외상투자기업협회(전화 : 922)986535)

2. 투자형식

1) 합자경영

이는 곧 주식형의 합영이다. 외국 혹은 중국경외지구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 개발구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평등호리의 원칙에 의하여 중국정부의 비준을 얻어 공동히 건립한 합자기업이며 중국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유한책임공사이다. 합영의 각방은 투자의 비례를 공동히 협상하여 공동히 투자하고 공동히 경영하여 손실을 공담하고 이윤을 같이 나눈다. 합영자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혹은 물자나 자료,

공지사항

공업재산권, 전문기술, 토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하여 각기 자기의 투자주권으로 하고 투자한 주권에 의하여 수익을 분배한다.

2) 합작경영

이는 곧 계약식 합영이다. 합작쌍방의 책임, 권리, 의무는 쌍방의 협의, 계약을 통해 규정한다. 계약은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또한 중국법률의 보호와 관할을 받는다. 합작경영의 일반 방법은 중국 합작자는 토지사용권, 노동력과 근무복무 혹은 이용할 수 있는 가옥, 설비, 시설과 소량의 자금을 제공하고 외국이나 중국경외지구의 합작자는 자금과 기술, 주요설비, 자재 등을 제공하여 평등호리의 원칙밑에 적당한 관리형식과 이윤분배방식 및 비례를 협상하여 정한다. 합작경영의 조직형식은 개발구내에 주로 법인지위를 갖고있는 경제실체를 건립하는 것이다. 합작쌍방이 협상하여 법인지위를 갖지않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책임지는 기타 조직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 합작경영기업과 합자기업의 주요한 구별은 다음과 같다. 합작기업은 화폐로서 주권을 계산하지 않으며 또한 주권의 비례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하지도 않고 오직 협의한 투자방식에 근거하여 수익을 분배하는데 있다.

3) 외자기업

외국 혹은 중국 경외지구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이 전부의 자금을 중국경외로부터 들여다 천진개발구에 독자로 경영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다 이 범위에 속한다.

3. 금융기구

중국의 각 금융기구는 모두다 천진개발구에 본·지사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주요한 금융기구는 중국은행천진경제기술개발구분행, 중국인민건설은행천진경제기술개발부분행, 중국공상은행천진경제기술개발구분행, 중국농업은행천진탕구분행개발구영업소, 천진경제기술개발구신탁투자공사 등이다. 이 금융기구들은 모두 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은행에 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국가가 규정한 심사비준부문의 비준을 얻어 중국공상행정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고 동시에 거래은행에 구좌(본폐와 외폐를 포함)를 개설하였고 일정한 비례의 자기자금(최소로 30%)이 있는 기업
- 기업 등기자본을 기한내에 전부 납부하고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업
- 기업경영관리기구가 건전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고 경영능력이 있는 기업
- 건전한 재무제도, 장부, 보고표가 있는 기업
-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고 또한 대여금의 본리를 상환할 수 있는 믿음성 있는 보증을 제공한 기업

1) 대여금의 종류

각 은행은 부동한 업무종점에 근거하여 대여금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유동자금대여금(인민폐와 외폐를 포함)
2. 외화저당대여금
3. 고정자산대여금
4. 수출포장대여금
5. 중국측 주권대여금
6. 저당대여금
7. 특종대여금

2) 대여금의 기한과 이자

유동자금대여금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고정자산대여금은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대여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문서

1. 차관을 신청하는 기업의 서면신청서
2. 기업의 재무보고표
3. 수출신용장과 매매계약협의서
4. 차관상환 보증문건과 관계문건 :
 신용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인의 자산신용문서 및 재무보고표.
 재산을 저당하여 보증할 때에는 저당물의 소유권증명 및 재산보험증 수입물품은 세관의

공지사항

허가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4. 외국인의 투자를 환영하는 항목 (1991년)

1.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국내외시장 수요에 맞는 새로운 설비, 새로운 소재를 생산하는 항목.
2. 국외시장 수요에 적용되며 산품의 고급화에 도움이 되고 새 시장을 개척하여 국외판매를 확대하여 수출과 외화가득을 높일 수 있는 항목.
3. 산품의 성능을 개진하고 소모를 낮추고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기술과 경제수익성을 높이고, 국내에서 아주 필요하며 기술이 선진적인 항목.
4. 에너지, 교통운수와 원자재공업건설에 필수한 항목.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농업 및 농용공업, 경공업, 방직업, 화학·석유화학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건축재료 및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의약공업, 목재공업, 신홍산업

공산품 품질인증마크 안내

현대는 상품의 홍수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여러 종류의 수많은 제품이 공장으로부터 생산되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

이런 많은 공산품중에는 아직도 불법으로 제조되었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품을 고르는데 있어 어떤 제조업체의 제품이 좋은 상품인지를 판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업진흥청에서는 소비자들에게는 공산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식별 능력을 높이고 제조업체로 하여금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중에도 특히 일반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최소한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공산품의

품질인증마크 제도이다.

보통 『마크』라고 하면 주로 기관, 단체, 회사 등의 기본표상일 수도 있고 어떤 행사를 대표하는 심볼로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공산품에 부여하는 각종 마크는 그 제품이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잘 만들어진 것임을 국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인증한 것으로써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품질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상품이면 일단 믿고 구입하여도 좋을 만큼 우수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이러한 품질인증마크를 숙지하고 있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제조업체에서는 품질인증 마크를 자기 제품에 부착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판매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공산품에 대한 품질인증마크를 소개하면서 제조업자, 소비자 등 모든 국민에게 언제나 사랑받는 유용한 마크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정부의 품질인증마크

○『검』자 표시 마크



공산품 중 인명피해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공공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품목을 지정하여 각 생산업체에서 제품 출고전에 반드시 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표시하는 마크 (수입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사)

○『품』자 표시마크



공장의 품질관리수준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와 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착하는 마크로서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공장품질관리가 잘

공지사항

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 표시 마크



감전 및 화재발생 등에 의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종 전기용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제조업등록을 필하고 생산된 제품이 전기용품 기술수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형식승인을 받아 표시하는 마크 (수입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



1종 전기용품외에 2종 전기용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제조업 신고를 필하고 생산하는 전기용품에 표시하는 마크 (수입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KS』 표시마크



KS란 Korean Industrial Standard의 약자로서 정부에서 정한 공산품에 대한 품질이나 가공기술에 대한 규격을 말하는데, 생산업체의 허가신청에 따라 정부에서 해당제품이 정해진 KS규격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해서 합격되었을 때 그 업체와 생산된 해당제품에 대해 표시도록 하는 마크

(외국업체로 신청에 의해 KS마크를 획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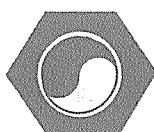
• 민간단체의 품질인증마크

○『Q』 표시 마크



Q(Quality)마크란 민간검사기관과 제조업자간의 계약에 따라 검사기관의 축적된 품질관리기법에 의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해주어 그 제품 및 공정등이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하는 마크로서 검사기관과 제조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당해제품의 품질을 보증(개개의 제품에 대한 보증)하고 있다. Q마크제도는 품목에 따라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 한국화학시험검사소, 한국의류시험검사소, 한국원사직물시험검사소, 한국기기유화시험검사소,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가 공동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

○『태극』 표시 마크



태극마크란 귀금속 가공상품에 대한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품위인증 마크를 말한다.

귀금속 제품은 타 공산품과 달리 소비자들이 사용중 품위의 진위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귀금속의 품위를 보고 믿고 살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4년 9월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설립을 허가하고 동 단체로 하여금 감정을 실시토록 하여 귀금속 보석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고 있다.